

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사업 자주 묻는 질문(FAQ)

① 하나의 신청기업이 여러 개 제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<답 변>

- 네 신청가능합니다.
단, 동일한 제품 또는 규격(모델)만 다를 경우에는 1개의 과제번호로 한 번만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예를 들어, 동일한 기능의 제품에 규격(모델)만 여러 개로 구성될 경우 1개 과제번호로 신청하되 신청 페이지 내 '제품관련정보' 란에서 '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규격(모델)을 원하는 개수만큼 추가 입력하시면 됩니다.
- 단, 하나의 신청기업에서 'A' R&D과제를 통한 제품 'A1'이 있고 전혀 다른 'B' R&D과제를 통한 제품 'B1'을 보유하여 모두 신청을 원할 경우, A1과 B1은 동일한 제품이 아니므로 A1에 대한 과제번호와 B1에 대한 과제번호를 각각 1개씩 따로 부여받아서 총 2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② 중소기업 R&D 과제를 완료(성공)한 '주관기관'만 신청 가능한가요?

<답 변>

- 네 그렇습니다.
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 R&D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대상이며, **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에만**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단, 예외적으로 산학연 R&D사업과 같이 **실질적인 R&D의 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** (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, 참여기업이 중소기업)는 참여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③ 기정원에서 수행한 중기부 R&D 사업은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?

<답 변>

-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다만, R&D기획역량지원사업,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, 인구인력지원사업, 연구장비활용 지원사업,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 1단계 네트워크기획지원사업, 산학연 collabo 사업중 1단계 예비 연구사업, 기타 예비기획 과제 등이 신청 가능하지 않습니다.
*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합니다.

④ 혁신제품 신청제품의 경우, 기 수행 R&D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나요?

<답 변>

- 네, 그렇습니다.
중기부 혁신제품은 중기부 소관의 중소기업 R&D사업 완료(성공)후,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.
- 따라서, 기 수행 R&D과제와 신청제품의 핵심기술 간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됩니다.

⑤ 중기부 R&D사업을 수행하였으나, SMTECH 신청 시 과제조회가 되지 않습니다.((EX) 지역특화사업)

<답 변>

- 전산상으로 수행하신 R&D사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, **수기입력** 하신 후, 제출서류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(성공) 증빙자료(공문 및 확인서 등)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제품과 기술의 연계성이 없는 기수행 R&D 과제 번호 기입 및 증빙자료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오니,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⑥ 기술혁신성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?

<답 변>

- 공고 내 지정절차 및 평가방법에 안내된 바와 같이, 기술혁신성 평가는 사전검토 및 대면평가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제품의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됩니다.
- 기술혁신성 대면평가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검토와 신청기업 대표자(또는 담당자)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며,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현장실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⑦ 중소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<답 변>

- 중소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시 정부, 공공기관, 지자체 등 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'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.
- 수의계약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 간 유효하며,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'혁신장터'를 통해 혁신제품 등록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.
- 또한 공공기관, 지자체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제도 및 제품 홍보와 혁신제품지정 기업-공공기관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혁신제품의 초기판로지원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후속관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.

⑧ 신청 시 제품식별번호는 꼭 있어야 하나요?

<답 변>

- 네, 그렇습니다.
공고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나라장터에서 해당정보를 먼저 발급받은 후, 종합관리 시스템(SMTECH)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물품식별번호가 없거나 임의의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경우, 사전검토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※ 물품식별번호 부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,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 시스템 온라인 접수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※ 동일한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시 지원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제품에 대해 물품식별번호를 이미 발급받아 벤처나라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을 경우, 물품식별번호 재발급 또는 신규발급은 불필요합니다.
(* 단, 용도, 규격 등이 달라진 경우 물품식별번호 재발급 필수)
- 다만, 기 R&D 과제 수행 이전에 발급받은 물품식별번호는 R&D과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⑨ 조달청의 조달적합성검토의 기준이 궁금합니다.

<답 변>

-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는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자기 점검표를 기반으로 하므로, 신청 제품의 특허 및 R&D결과(성과)와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.

<참고> 혁신제품 규격서 검토사항

검토항목	검토내용
규격 (제원)	· 물품목록번호의 유효성 · 신청서류(자기점검표 등)와 물품목록번호와의 일치성
지식재산권 (R&D기술)	· 적용된 지재권의 명칭, 유효기간, 등록권리 등의 적격성 · 기술의 적용여부 검토
성능 (품질)	· KS, 단체표준, 임의인증 등 공인기준 이상의 품질기준 적용여부 검토 · 의뢰자 제시 기준의 경우, 공인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적정성 검토

- 유형 I의 경우 지식재산권 적용이 필수요건이 아니므로, 제품소개서·자기점검표 등을 바탕으로 기술과 제품의 일치성 검토

◦ (사후조치) 규격 불일치·성능 미충족일 경우 : 규격검토 진행 보류 → 보완 시 규격 검토 재진행

⑩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내 제조 유효기간 갱신여부 확인이 필요한가요?

<답 변>

- 네 그렇습니다.

경쟁입찰참가자격증 유효기간 경과는 혁신제품 지정 절차 중 조달 적합성 검토시 부적합 사유에 해당되어 혁신제품 지정에서 보류(제외) 될 수 있습니다.

☞ 나라장터(g2b.go.kr)로그인 - 나의나라장터 - 업체정보관리 - 입찰참가자격변경/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메뉴

⑪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?

<답 변>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써,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smpp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☞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.go.kr) - 정보조회 - 제품정보 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

※ 중기간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증명서* 제출 필수

* (직접생산증명) :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때 직접생산 능력의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것